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3
----------	------

제출년월일 : 2008년 9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소팀제를 課별 최소 20 ~30명 이상의 大課로 업무 기능별 통·폐합
- 본청과 업무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의 통·폐합과 시정방침 및 대규모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명칭 및 부서 통·폐합

본 청 : 2본부 35팀 ⇒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 (△16팀)

● 부시장 직속 : 2팀 ⇒ 1실 1담당관

-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팀 + 기획예산팀의 기획 및 예산업무 + 혁신풍보팀의 혁신업무 + 성과관리업무(BSC포함) + 법무감사팀
- 투자유치담당관 : 투자유치팀의 투자유치사무 + 기획예산팀의 서울사무소

● 미래경영본부 : 16팀 ⇒ 9과

- 한방경제과 : 한방산업팀 + 지역경제팀+ 투자유치팀의 기업지원 업무 + 전략사업팀의 산학관 업무

- 엑스포 지원단 : 한방엑스포 지원
- 문화관광과 : 축제영상팀+ 문화체육팀의 문화업무 +관광팀
- 지역개발과 : 지역계획팀 + 지역개발팀(산촌개발업무제외)
- 건설방재과 : 도로하천팀 + 도시관리팀의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업무
+ 재난관리팀의 재난업무
- 건축디자인과 : 건축팀 + 도시관리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
의 거리업무 + 지중화 사업
- 교통과 : 교통팀 + 차량등록팀
-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팀 + 농축유통팀
- 산림공원과 : 산림관리팀 + 도시관리팀의 공원녹지 및 국립공원업무
+ 지역개발팀의 산촌마을개발업무

❸ 행정복지본부 : 17팀 ⇒ 8과

- 자치행정과 : 자치운영팀 + 인적지원팀 + 재난관리팀의 통합방위업무
- 홍보전산과 : 혁신홍보팀(혁신업무제외) + 정보통신팀
- 회계과 : 회계팀 + 자치운영팀의 청사관리업무
- 세정과 : 세무부과팀 + 세무징수팀
- 평생학습체육과 : 평생학습팀 + 문화체육팀의 체육업무 + 문화체
육시설관리소
- 사회복지과 : 시민복지팀 + 여성유소팀 + 경로재활팀
- 민원지적과 : 민원서비스팀 + 토지정보팀
- 환경과 : 환경보호팀 + 생활환경팀

직속기관 : 2기관 6팀 ⇒ 2기관 4과 (△2)

❹ 보건소 : 4팀 ⇒ 2과

- 건강증진과 : 보건운영팀 (지소, 진료소 포함) + 건강증진팀 + 방문
보건업무
- 보건위생과 : 보건위생팀 + 보건운영팀의 진료실운영

● 농업기술센터 : 2팀 ⇒ 2과

- 기술지원과 : 기술개발팀
-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팀

사업소 : 5 사업소 ⇒ 4 사업소 ($\Delta 1$ 사업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 본청과 통합으로 폐지

※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현직제 유지

□ 부장사무 조정

● 부시장 직속

-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예산, 시정주요 전략업무추진
- 창의시정 · 고객만족 · 성과관리
- 의회, 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무
- 맞춤형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 서울사무소 운영

● 미래경영본부

- 한방인프라 및 한방엑스포 지원, 신활력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산 · 학 · 관 협력사무, 균형발전 업무
-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재지정 · 보존관리, 문화 · 예술단체 지원
- 관광시책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 관광지 및 온천개발
- 축제기획 및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 도시계획,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개발사업
- 건설행정, 도로유지, 토목 · 건설사업

-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건축행정 및 인·허가, 공공디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교통 편의시설 설치관리·지도단속,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 농정업무 및 영농지원,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유통 지원
- 산림보호 및 관리, 휴양림 및 공원관리, 산촌마을조성

● 행정복지본부

- 행정구역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방위
- 조직관리·공무원 인사·교육
- 시정 홍보, 통계, 통신 및 행정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지출, 계약, 행정·청사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 평생학습, 인재육성재단 운영, 체육지원, 문화·체육 시설관리
- 자원봉사, 새마을 등 단체업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곤궁자·노인·여성·아동·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지원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관리
- 민원접수 및 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 및 여권
- 지적 및 부동산관리, 새주소 사업
-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 청소·오물수거 및 처리
-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공중화장실 관리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12조 내지 제114조, 제11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장, 과장의 직급 등) ①제천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본부장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 기구로 전략기획실과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제4조(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경영본부, 행정복지본부를 둔다.

제5조(미래경영본부에 두는 과) ①미래경영본부에 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미래경영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상, 균형발전, 산·학·관 협력, 삶의질 향상에 관한 사무
2. 한방산업 및 인프라 육성·관리, 신활력 사업
3. 한방엑스포 행사추진 및 지원
4.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노사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단지 조성
5. 문화재 지정·보존 관리, 문화·예술 단체지원
6.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관광지 및 온천개발
7. 축제 기획 및 운영
8.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9. 지역계획 사무, 지역개발사업, 마을개발업무
10.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보수, GIS 사업
11.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12. 재난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3. 건축행정 및 인·허가, 공공디자인, 광고물
1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중화 사업, 문화의 거리 관리
15.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설치·관리, 차량등록 관리
16.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
17.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18. 산림보호 및 관리, 도시공원·녹지, 휴양림

제6조(행정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행정복지본부에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를 둔다.

②행정복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운영, 외국인 지원 사무
3.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교육
4.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5. 민방위, 병력동원 지원
6. 시정홍보, 소식지 발간
7. 행정 전산화 및 통신사무
8.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9. 지출, 계약, 청사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
10. 지방세·지방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1. 평생학습, 인재육성재단 육성 및 운영
12. 생활체육지원, 도민체전
13.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5.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16.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17. 자원봉사,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18. 여성·아동·청소년·노인·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19.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장례지원
20.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인감, 여권등 민원 업무
21. 조직관리, 공시지가, 새주소 사업, 부동산관리
22.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 오염총량관리
23. 청소·오물수거 및 처리
24.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리
25.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211-1번지(옹당이길 22)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2.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3.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
4.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
5.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
6.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
7. 소득작목 주산단지 기술보급사업
8.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9. 지역특산물 품평대회 및 홍보
10.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11. 농산물가공 및 브랜드 상품개발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 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 마. 기타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 나. 사업소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
- 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 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
- 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
- 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
- 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 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
- 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차.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 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
- 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 라.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관광시설관리소

- 가. 청풍문화재단지 관리 및 운영
- 나. 촬영장 및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 다. 수상레저사업 개발
- 라. 호반개발계획 수립 시행 및 경영화 사업 추진
- 마. 수상레저 관련 관광선 및 수상항공시설관리 운영

5장 읍·면·동

제16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략사업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본부장 및 팀장”을 “본부장·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③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팀장”을 각각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④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팀장”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지역경제팀장”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방산업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광팀)”을“(문화관광과)”로 한다.

⑧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팀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업무담당자”를 “문화팀장”으로 한다.

⑨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역계획팀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⑩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업무담당자”를 “지역계획팀장”으로 한다.

⑪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시계획담당”을 “지역계획팀장”으로 한다.

⑫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로하천팀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⑬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을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⑯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담당자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⑰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지관리위원정수 중 “담당(농업축산)팀장”을 “담당(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농업정책팀장이”로 한다.

⑲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정책팀장, 농축유통팀장, 기술개발팀장, 산림관리팀장”을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같은조제4항 중 “농정담당주사”를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업정책팀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담당자로”를 “농업정책팀장으로”으로 한다.

⑳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팀장”을 “과장”으로, “팀원”을 “팀장”으로 한다.

㉑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농업정책팀장,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같은조제5항 중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㉒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유통가공업무

담당자로”를 “원예유통팀장으로”으로 한다.

②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③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산림관리팀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7항 중 “피해보상 업무담당자”를 “환경팀장”으로 한다.

④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생활환경팀장”을 “환경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자원관리팀장으로”로 한다.

⑤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중 “자치운영팀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자치운영팀”을 “자치행정과”로, “정보통신팀”을 “홍보전산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7조 관련)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

번호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	지방세과세증명원	세정과	
2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세정과	
3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지적과, 읍, 면 ·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개발과	
5	토지(임야)대장등본	민원지적과	
6	지적(임야)도등본	민원지적과	
7	수치지적도등본	민원지적과	
8	기타단체등록증명	민원지적과	
9	주민등록등 · 초본	읍 · 면 · 동	
10	인감증명	읍 · 면 · 동	
1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읍 · 면 · 동	

12	토지가격확인원	읍·면·동	
13	지방세납세완납(과세·미납)증명	읍·면·동	
14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 실과, 사업소 읍·면·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중 “처리팀”을 각각 “처리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결재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㉖ 제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장”을 “한방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천시지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포상업무담당자”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치운영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㉗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팀”을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

㉘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운영팀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업무담당자”를 “시정팀장”으로 한다.

㉙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전략사업팀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기획예산팀장”을 “전략기획실장, 한방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팀장 및 소장”을 “실·과장, 담당관 및 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자”를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u>전략기획</u>	1. 기획예산위원회 2. 재안심사위원회	•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0조
<u>자치행정</u>	1. 직무발명보상심의 위원회	•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u>회계</u>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u>사회복지</u>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u>문화관광</u>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

⑩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⑪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을 “전략기획실 예산팀장”으로 한다.

⑫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혁신풍보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⑬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⑭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중 “주관팀장”을 각각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회계팀”을 “회계과”로 한다.

⑮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⑬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계약담당자로”를 “계약팀장으로”으로 한다.

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재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⑮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팀을”를 “실·과 및 담당관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팀장”을 각각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⑯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 2.기금분임운용관 : 건설방재과장
- 3.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제2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팀장급·담당급”을 “과장급·팀장급”으로 한다.

- ④①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 ④②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관리팀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 ④③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④④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팀장급”을 “과장급”으로, 같은조제4항 중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를 “재난관리팀장으로”으로 한다.
- ④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를 “건설방재과 재난 관리팀장으로”으로 한다.
- ④⑥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시민복지팀장으로”으로 한다.
- ④⑦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건강증진팀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 ④⑧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시민복지팀장으로”으로 한다.

④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여성유소년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여성유소년팀장으로”으로 한다.

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유소년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자로”를 “여성유소년팀장으로”으로 한다.

⑥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여성유소년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여성유소년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여성유소년팀장으로”으로 한다.

⑦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로재활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 “기금관리팀의 업무담당자로”를 “경로재활팀장으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본부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한다.

⑧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경로재활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경로재활팀장이”로 한다.

⑨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팀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 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팀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문화팀장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3. 기금출납원 : 문화팀장

- ⑥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식 중 “팀명”을 “실과명”으로, “인적자원팀”을 “자치행정과”로, “시민복지팀, 경로재활팀, 여성유소년팀”을 “사회복지과”로,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을 “세정과”로, “회계팀”을 “회계과”로, “생활환경팀”을 “환경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농축유통팀”을 “농업축산과”로 한다.

별표 2의 서식 중 “팀명”을 “실과명”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한다.

- ⑦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자로”를 “보건행정팀장으로”으로 한다.
⑧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방위생팀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업무담당자”를 “의약위생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예방위생팀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위생 업무담당자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 ⑨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업무담당자가”를 “한방건강팀장이”로 한다.

⑥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3조제2항 중 “기술개발팀장”을 각각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업무담당자”를 “지도인력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 관련)

기 구 명 칭	위 치	새주소	관 할 구 역
제천시 보건소	청전동 653	사성길 56	제천시 일원
봉양읍 보건지소	봉양읍 주포리 210-11	주포고개길 5	봉양읍 일원
금성면 보건지소	금성면 구룡리 272-16	청풍명월로 1322	금성면 일원
청풍면 보건지소	청풍면 물태리 133-99	한벽길 29	청풍면 일원
수산면 보건지소	수산면 수산리 610-8	새터말길 10	수산면 일원
덕산면 보건지소	덕산면 도전리 364-7	약초길 100	덕산면 일원
한수면 보건지소	한수면 송계리 282-49	창말길 6	한수면 일원
백운면 보건지소	백운면 평동리 209-2	본말2길 5	백운면 일원
송학면 보건지소	송학면 시곡리 1146-1	제방길 1	송학면 일원
옥전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옥전리 138-3	옥전길 28	옥전, 학산, 구학1.2
공전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공전리 630-2	별담길 16	공전1.2.3, 원박
마곡지구보건진료소	봉양읍 마곡리 570-2	방아다리길 29	구곡1.2.3, 삼거리, 마곡
양화지구보건진료소	금성면 양화리 341-4	청풍명월로 866	동막, 대장, 월림2, 양화
장선지구보건진료소	청풍면 장선리 59-2	장선길 290	장선, 후산, 부산, 황석
대전지구보건진료소	수산면 대전리 173-2	인삼길 535	대전, 수곡2, 수리
도전지구보건진료소	수산면 도전리 197-1	오토길 269	도전, 구곡, 서곡, 지곡, 울지
월악지구보건진료소	덕산면 월악리 575-2	월악리길 31	월악, 수산2, 억수, 광천, 금곡, 삼전
도기지구보건진료소	덕산면 도기리 479-1	싸리길 17	도기, 선고1
화당지구보건진료소	백운면 화당리 61-1	풀안길 15	화당1.2, 운학1.2, 덕동
송한지구보건진료소	송학면 송한리 452	오미길 66	송한1.2, 오미, 포전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새주소
환경사업소	제천시 천남동 50번지	번영길 96
수도사업소	제천시 고암동 124-4번지	탑안로 520
시립도서관	제천시 장락동 672-8번지	도서관길 92
관광시설관리소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번지	청풍명월로 2420

신·구조문대비표

1.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전략사업팀장이 된다.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전략기획실장-----

2.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부장 및 팀장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1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본부장· 실·과장 및 담당관-----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장 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투자유치담당관-----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팀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투자유치 담당관-----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에서 시로 이전 중설하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지식경제부----- ----- ----- ----- ②(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 -----

4.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③ (생략)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한방경제과장----- ③ (현행과 같음)

5.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1. ~ 6. (생 략)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한방경제과장_____</p>

6.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u>한방산업팀장</u>이 되며 서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자치행정과장 _____ ③ (현행과 같음)</p>

7.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캐릭터 사용 전담부서 지정) ①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캐릭터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관광팀)를 지정하고 이하 모든 부서에서의 캐릭터 사용 및 타인, 타기관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은 사용전에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사용한다. ② (생 략)</p>	<p>제13조(캐릭터 사용 전담부서 지정) ① _____ _____ _____-(문화관광과)-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p>

8.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관광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p>	<p>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문화관광과장 _____ 문화팀장-</p>

9.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계획팀장이 된다. ③ ~ ⑤ (생 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역개발과장- ③ ~ ⑤ (현행과 같음)</p>

10.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p>	<p>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지역개발과장 _____ 지역 계획팀장- ③ (현행과 같음)</p>

11.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은 5급이상의 제천시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 문화재, 미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도시계획팀장이 된다. ⑥ ~ ⑨ (생략)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⑥ ~ ⑨ (생략) 지역계획팀장

12.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하천팀장이 된다. ⑤ (생략)	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_____ ⑤ (현행과 같음)

13. 제천시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회의록 비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1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경영본부장,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④ ~ ⑥ (현행과 같음)

1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자가 된다.	제6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_____ _____

16.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농지 관리 위원 정수					【별표 1】 농지 관리 위원 정수				
구 분	계	위원장	농민대표위 원	농업관련기 관 추천위원	구 분	계	위원장	농민대표위 원	농업관련기 관 추천위원
동 지 역	25	1	22	2	동 지 역	25	1	22	2
봉 양 읍	27	1	26		봉 양 읍	27	1	26	
금 성 면	16	1	15		금 성 면	16	1	15	
청 풍 면	20	1	19		청 풍 면	20	1	19	
수 산 면	24	1	23		수 산 면	24	1	23	
덕 산 면	18	1	17		덕 산 면	18	1	17	
한 수 면	7	1	6		한 수 면	7	1	6	
백 운 면	23	1	22		백 운 면	23	1	22	
송 학	18	1	17		송 학	18	1	17	
계	178	9	167	2	계	178	9	167	2

주 :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제천시 농지역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담당(농
업축산)팀장이 되며, 농민대표 위원중 농지역은
법정동, 읍·면지역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한다.

주 : _____ 담당(농
업축산)과장 _____

17.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1인씩 두되, 간사는 <u>농업정책팀장이 되고</u> 서기는 <u>업무담당자가 된다</u>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u>농업축산과장</u> _____ <u>농업정책팀장이 된다</u> . ④ (현행과 같음)

18.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u>농업정책 팀장, 농축유통팀장, 기술개발팀장, 산림관리팀장</u> <u>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 1. ~ 5. (생략)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농정담당주사가 된다.</u>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u>농업축산 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공원과장</u>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농업정책팀장이 된다.</u>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u>농업정책팀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 <u>원은 기금담당자로</u> 한다. ③ (생략)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생략) ② _____ <u>농업축산과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 <u>원은 농업정책팀장으로</u> 한다. ③ (생략)

19.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 팀원이 담당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과장이 되고 서기는 ----- 팀장이 담당한다.

20.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농업정책팀장,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미래경영본부장-----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⑤ ----- 업무담당팀장으로 -----</p>

21.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시의원, 유통센터 업무관련 팀장과 유통센터 운영·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종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가공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7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 원예유통팀장으로 -----</p>

22.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제천시 부시장 및 업무관련 본부장·팀장 2. ~ 9. (생략) ③ ~ ⑥ (생략)</p>	<p>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실·과장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p>

23.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피해보상 업무관련 담당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산림관리팀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피해보상 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장----- -----산림공원과장-----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팀장-----</p>

24.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환경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생 략)</p>	<p>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환경과장 -----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25. 제천시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운영팀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p>	<p>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치행정과장-----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인대장) ① 자치운영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p>	<p>제8조(공인 대장) ① 자치행정과장----- -----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운영팀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 ----- -----</p>
<p>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자치운영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치운영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공인의 인영 및 기록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p>	<p>11조(공인의 폐기) ① ----- -----자치행정---- 과장----- ② 자치행정과장----- -----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인 관수자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 (성 략)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보관 및 사용 팀장 및 직속기관장, 소장, 읍면동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③ 공인의 등록·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하여 <u>자치운영팀장</u> 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자치운영팀</u> 에서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u>정보통신팀</u> 에서는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되, 전자 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 관수자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u>실·과장 및 담당관</u> _____ ③ _____ <u>자치행정과장</u> _____ ④ _____ <u>자치행정과</u> <u>홍보전산과</u> _____

현행		개정안	
【별표 2】 (제17조 관련)		【별표 2】 (제17조 관련)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	

번호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	지방세과세증명원	세무부과팀	
2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세무징수팀	
3	호적등·초본	민원서비스팀, 읍,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계획팀	
5	토지(임야)대장등본	토지정보팀	
6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정보팀	
7	수치지적도등본	토지정보팀	
8	기타단체등록증명	민원서비스팀	
9	주민등록등·초본	읍·면·동	
10	인감증명	읍·면·동	
1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읍·면·동	
12	토지가격확인원	읍·면·동	
13	지방세납세완납(과세·미납)증명	읍·면·동	
14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 팀, 사업소 읍·면·동	

번호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	지방세과세증명원	세청과	
2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세정과	
3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지적과, 읍, 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개발과	
5	토지(임야)대장등본	민원지적과	
6	지적(임야)도등본	민원지적과	
7	수치지적도등본	민원지적과	
8	기타단체등록증명	민원지적과	
9	주민등록등·초본	읍·면·동	
10	인감증명	읍·면·동	
1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읍·면·동	
12	토지가격확인원	읍·면·동	
13	지방세납세완납(과세·미납)증명	읍·면·동	
14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 과, 사업소 읍·면·동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제2항 관련)</p> <p>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 “서식 생략”</p> <p>시행 <u>처리팀</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팀</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제2항 관련)</p> <p>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 “서식 생략”</p> <p>시행 <u>처리과</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과</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5서식】 (제12조 관련)</p> <p>공인사고보고서 “서식생략”</p> <p>시행 <u>처리팀</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팀</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5서식】 (제12조 관련)</p> <p>공인사고보고서 “서식생략”</p> <p>시행 <u>처리과</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과</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6호서식】 (제13조 제3항 관련)</p> <p>관수자 지정 통보</p> <p>시행 <u>처리팀</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팀</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6호서식】 (제13조 제3항 관련)</p> <p>관수자 지정 통보</p> <p>시행 <u>처리과</u>-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u>처리과</u>-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p>																																																	
<p>【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p> <p>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인쇄문서명</th> <td colspan="3"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공 인 명</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인쇄공인규격</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일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인쇄량 (매)</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량 (매)</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 내역</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잔여량 (매)</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결 재</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담당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팀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body> </table>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결 재		담당자	팀장								<p>【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p> <p>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인쇄문서명</th> <td colspan="3" style="padding: 2px;"></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공 인 명</td> <td style="padding: 2px;"></td> <td style="padding: 2px;">인쇄공인규격</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일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인쇄량 (매)</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량 (매)</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사용 내역</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잔여량 (매)</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결 재</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담당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팀장</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과 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td> </tr> </tbody> </table>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결 재		담당자	팀장	과 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결 재																																													
					담당자	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용 내역	잔여량 (매)	결 재																																													
					담당자	팀장	과 장																																											

26. 제천시 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 ②(생략) ③ 위원은 미래경영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제천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생략)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한방 <u>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천지부장</u> _____ ④ _____ 충무팀장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팀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1조(포상절차) ① _____ 실·과장 및 담당관 _____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운영팀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_____ 자치행정과장

27.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②(생략)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본부 및 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실·과 및 담당관 _____

28. 제천시민 대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자치운영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담당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자치행정과장, _____ 시정팀장

29.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②(생략) ③ 당연직위원은 각 본부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팀장, 지역경제팀장, 자치운영팀장,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전략기획실장, 한방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홍보전산과장 _____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안건을 제출하는 팀장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6조(간사) ①(생략)</p> <p>②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③(생략)</p>	<p>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 실·과장, 담당관 및 소장 -----</p> <p>②(현행과 같음)</p> <p>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p> <p>②----- 전략기획팀장-----</p> <p>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제11호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별</th> <th>위원회명</th> <th>근거규정</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예산</td> <td>1. 기획예산위원회</td> <td>·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td> </tr> <tr> <td>자치운영</td> <td>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2. 제안심사위원회</td> <td>·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2조</td> </tr> <tr> <td>회계</td> <td>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td> <td>·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td> </tr> <tr> <td>역성육아</td> <td>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td> <td>·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td> </tr> <tr> <td>관광</td> <td>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td> <td>·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td> </tr> </tbody> </table>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예산	1. 기획예산위원회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자치운영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2. 제안심사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2조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역성육아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관광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	<p>【별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3조제11호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별</th> <th>위원회명</th> <th>근거규정</th> </tr> </thead> <tbody> <tr> <td>전략기획</td> <td>1. 기획예산위원회</td> <td>·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td> </tr> <tr> <td>자치행정</td> <td>2. 제안심사위원회</td> <td>·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0조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td> </tr> <tr> <td>회계</td> <td>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td> <td>·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td> </tr> <tr> <td>사회복지</td> <td>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td> <td>·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td> </tr> <tr> <td>문화관광</td> <td>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td> <td>·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td> </tr> </tbody> </table>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전략기획	1. 기획예산위원회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자치행정	2. 제안심사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0조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회복지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문화관광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기획예산	1. 기획예산위원회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자치운영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2. 제안심사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2조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역성육아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관광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																																			
분야별	위원회명	근거규정																																			
전략기획	1. 기획예산위원회	·제천시기획업무규칙 제7조																																			
자치행정	2. 제안심사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0조 1.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회계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조례 제23조 1.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회복지	1.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2. 영세민생활안정기 금관리심사위원회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 제4조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용자 조례 제7조																																			
문화관광	1. 제천시상표권심사 위원회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 에 관한 조례 제10조																																			

30.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생략)</p> <p>②당연직위원은 부시장·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4. (생략)</p> <p>③(생략)</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투지유치담당관-----</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3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전략기획실 예산팀장 _____ _____ _____</p>

32.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혁신훈보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략기획실장 —————

33.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지 1호서식】	【별지 1호서식】
<p>제천시공고 제 호 제천시 ○○○○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p> <p>제천시 ○○○○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제 천 시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할 경우 조례·규칙(안) 4. 의견제출 <p>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될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번호 ○○○-○○○○, FAX-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p> 	<p>제천시공고 제 호 제천시 ○○○○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p> <p>제천시 ○○○○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제 천 시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할 경우 조례·규칙(안) 4. 의견제출 <p>이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실·파·단장 및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번호 ○○○-○○○○, FAX-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p>

34.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35.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팀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p> <hr/> <hr/> <p style="text-align: center;">설·과장 및 담당관</p> <hr/> <hr/> <p>② (현행과 같음)</p>

36.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계약 담당자로</u> 한다	제7조(간사) _____ <u>계약 팀장으로</u>

37.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현행										개정안																
【별지 10호서식】 (제21조 2항관련)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별지 10호서식】 (제21조 2항관련)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1.	가.	바.	드.	카.	일.	녀.	서.	금일결	저.	금일발	개.	정.	안.	가.	바.	드.	카.	일.	녀.	서.	금일결	저.	금일발	개.	정.	
	나.	사.	파.	타.	지.	다.	서.	손	처.	행	개.	정.	안.	나.	사.	파.	타.	지.	다.	서.	금일결	저.	금일발	개.	정.	
	다.	라.	라.	지.	지.	지.	금	(C)	(A-B-C)	(A-B-C)	(A-B-C)	(A-B-C)	(A-B-C)	다.	라.	라.	지.	지.	지.	금	(C)	(A-B-C)	(A-B-C)	(A-B-C)	(A-B-C)	
	마.	차.	차.	하.	액	액	금	수	미	미	미	미	미	당	당	당	당	당	당	금	수	미	미	미	미	
로.	로.	보.	보.	보.	소.	소.	금	수	액	액	액	액	액	당	당	당	당	당	당	금	수	미	미	미	미	
로.	로.	보.	보.	보.	소.	소.	금	수	미	미	미	미	미	당	당	당	당	당	당	금	수	미	미	미	미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 비고란에는 조정카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별지 11호서식】 (제21조 4항관련)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무인발급기 번호 :																										
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재	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재	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재	월일	금일까지 금액(A)	전일까지 금액(B)	금일결손(C)	금일발행 (A-B-C)	결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당 담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당 담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당 담자	팀장	과장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당 담자	팀장	과장

38.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2조(용어의 정의) 1.~2. (생략)										2조(용어의 정의) 1.~2. (현행과 같음)									
3."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3. 실·과 및 담당관을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10조(구성) ① (생략)										1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 의회의원, 업무관련 팀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실·과 및 담당관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팀장이 된다										③ 흥보전산과장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5조(설치) ① ~ ② (생략)										15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흥보전산과장									

39.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부부장이 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로 한다. 	<p>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설방재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미래경영본부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재난관리팀장-----

40.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략) ③ (생략) 1. 총무·민방위·예비군담당간사 : 재난관리팀장 2. (생략) <p>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관리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생략)</p> <p>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팀장급·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시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9인으로, 읍면동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한다.</p> <p>⑤ (생략)</p>	<p>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 자치행정과장 2. (현행과 같음) <p>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 자치행정과장----- ③ (현행과 같음) ④ ----- 과장급·팀장급----- ⑤ (현행과 같음)

41.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한다.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건설방재과장-----

42.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방재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_____ 재과장 _____ 재난관리팀장 _____ 건설발

43.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44. 제천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45.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 (간사) ① (생 략) ②간사는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생 략)</p>	<p>제7조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장----- ③ (현행과 같음)</p>

46.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생 락) ② 기금운용관은 <u>시민복지팀장</u> 으로 하고, 기금출 납원은 <u>업무담당자</u> 로 한다.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회복지과장</u> <u>시민복지팀장으로</u> .

47.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실무협의체) ① (생 략)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며, 시민복지팀장 및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건강증진과장 _____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48.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민복지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_____ 시민복지팀장으로 _____.

49.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유소년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_____ 여성유소년팀장으로 _____.

50.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유소년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여성유소년팀장으로 _____.

51.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여성정책업무의 본부장, 기획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유소년팀장이 된다. 제3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유소년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생 략)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전략기획실장 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 _____ 제32조(회계공무원) ①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_____ 여성유소년팀장으로 _____ ② (현행과 같음)

52.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3인, 행정복지본부장, 경로재활팀장 등 당연직과 제천시노인회장, 읍면동 분회장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팀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④ _____ _____ 경로재활팀장으로 _____ 제11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본부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한다.

53.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로재활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사회복지과장 _____ _____ 경로재활팀장이 _____

54.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1. ~ 3. (생략) ④ (생략)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평생학습체육과장 _____

55.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체육팀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평생학습체육과장 _____ ③ ~ ④ (현행과 같음)

56.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체육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략)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문화관광과장 _____ 문화팀장이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2. 본부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3. 기금출납원 : 문화팀장

57.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별표 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실무명	사무명	근거법령	실무명	사무명	근거법령
인적 자원팀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자치 행정과	1. 소내 공무원의 보직 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시민 복지팀	1. 의료급여증발급(재사용)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사회 복지과	1. 의료급여증발급(재사용)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발급 3. 개장신고 4. 매장신고 5. 화장신고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경로 재활팀	3.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경로 재활팀	3. 개장신고 4. 매장신고 5. 화장신고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경로 재활팀	4.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경로 재활팀	4.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경로 재활팀	5.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경로 재활팀	5. 화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경로 재활팀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경로 재활팀	6. 개장, 매장, 화장신고필증 교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경로 재활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경로 재활팀	7.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세무 부과팀	1. 시세 과세자료조사 보고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세정과	1. 시세 과세자료조사 보고 2.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3. 시세 납세고지서 등록장 체납고지서 제 송달 4. 과세표준에 결정에 따른 특성 및 가격조사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지방세법 제4조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체납고지서 제 송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세무 징수팀	1.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2. 시세 납세고지서 등록장 체납고지서 제 송달 3. 과세표준에 결정에 따른 특성 및 가격조사 4. 시세 제증명 발급 5. 수입증지 판매	지방세법 제4조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체납고지서 제 송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제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지방세법 제44조	세정과	5. 시세 제증명 발급 6. 수입증지 판매 7.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8.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 위촉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위촉대 상자 선정 및 배부업무에 한함)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제천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지방세법 제4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
세무 징수팀	6. 등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7.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 위촉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위촉대 상자 선정 및 배부업무에 한함)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	세정과	6. 등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 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7.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 위촉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위촉대 상자 선정 및 배부업무에 한함)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

78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

현행		개정안			
회계팀	회계과	회계과	회계과		
1. 시유·감·종재산의 대부 및 해지(음·면) ※ 임야의 신규대부 제외 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3. 국공유재산 고지서송달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1. 시유·감·종재산의 대부 및 해지(음·면) ※ 임야의 신규대부 제외 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3. 국공유재산 고지서송달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생활환경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1. 청소업무의 관리(음·면) 2. 공중화장실의 관리(음·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건축팀	건축법 제9조 및 제기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기조 건축법 제71조 및 제72조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6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25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 11조 내지 제17 조	1. 건축신고수리(음·면)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음·면) 3. 옹벽등공작물축조신고수 리(음·면) 4.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음·면) 5. 건축물착공신고(음면에 위 임된 허가 및 신고대상 건 축물에 한한다) 6. 건축물사용승인 및 임시사 용승인(음면에 위임된 허 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을에 한한다) 7.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증축의 경 우를 포함한다)의 건축허 가(봉양읍에 한한다) 8. 용도변경신고수리(음·면) 9.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등 (음·면) 10. 불법건축물단속(음·면) 11.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 변 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나. 세로형 간판 다. 둘출간판 라. 공연간판(음·면) 마. 지주이용간판(네온 사 용시 반드시 시와 협의) 바. 현수막(음·면) 사. 벽보(음·면) 아. 전단(음·면) 자. 창문이용광고물 차. 전기이용광고물 (가~마호와 같음) ※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2개 읍면동 이상 해 당시는 제외 12. 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제11호와 같음) 13.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정비 다. 과태료 부과 징수 14.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 의 취소(제11호와 같음)	1. 건축신고수리(음·면)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음·면) 3. 옹벽등공작물축조신고수 리(음·면) 4.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음·면) 5. 건축물착공신고(음면에 위 임된 허가 및 신고대상 건 축물에 한한다) 6. 건축물사용승인 및 임시사 용승인(음면에 위임된 허 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을에 한한다) 7.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증축의 경 우를 포함한다)의 건축허 가(봉양읍에 한한다) 8. 용도변경신고수리(음·면) 9.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등 (음·면) 10. 불법건축물단속(음·면) 11.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 변 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나. 세로형 간판 다. 둘출간판 라. 공연간판(음·면) 마. 지주이용간판(네온 사 용시 반드시 시와 협의) 바. 현수막(음·면) 사. 벽보(음·면) 아. 전단(음·면) 자. 창문이용광고물 차. 전기이용광고물 (가~마호와 같음) ※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2개 읍면동 이상 해 당시는 제외 12. 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제11호와 같음) 13.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정비 다. 과태료 부과 징수 14.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 의 취소(제11호와 같음)	건축법 제9조 및 제기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기조 건축법 제71조 및 제72조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6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25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 11조 내지 제17 조	건축법 제9조 및 제기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기조 건축법 제71조 및 제72조 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6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25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 11조 내지 제17 조
농축유통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	1. 자기 도살신고(음·면) ※ 단 고시지역에 한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		

현행			개정안		
【별표 2】 읍·면·동 온라인 민원위임사항			【별표 2】 읍·면·동 온라인 민원위임사항		
팀명	사무명	근거법령	설파명	사무명	근거법령
건축팀	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 열람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건축디 자인과	1.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초본 발급, 열람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58.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간사) ----- ----- 보건행정팀장 으로 -----

59.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략)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방위생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자를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건위생과장 ----- 의약위생팀장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제천시 예방위생팀장 2. ~ 3. (생략)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보건위생과장 2. ~ 3. (현행과 같음) 4. ----- 위생업무담당팀장이 ----- ④ (현행과 같음)

60.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간사) ----- ----- 환방건강팀장이 ----- -----

61.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개발팀장, 업무담당자, 부회장 2인, 총무, 감사 2인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술지원과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계 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기술개발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3조(회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술지원과장 ----- ----- 지도인력팀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천시 공고 제2008 - 90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7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소팀제를 흡별 최소 20 ~ 30명 이상의 大課로 업무 기능별 통·폐합
- 본청과 업무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의 통·폐합과 시정방침 및 대규모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구 명칭 및 부서 통·폐합

본 청 : 2본부 35팀 ⇒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 ($\Delta 16$ 팀)

● 부시장 직속 : 2팀 ⇒ 1실 1담당관

-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팀 + 기획예산팀의 기획 및 예산업무+ 혁신흥보팀의 혁신업무 +성과관리업무(BSC포함) + 법무감사팀
- 투자유치담당관 : 투자유치팀의 투자유치사무 + 기획예산팀의 서울사무소

● 미래경영본부 : 16팀 ⇒ 9과

- 한방경제과 : 한방산업팀 + 지역경제팀 +투자유치팀의 기업지원 업무 + 전략사업팀의 산학관 업무
- 엑스포지원단 : 한방엑스포 지원(TF)
- 문화관광과 : 축제영상팀+ 문화체육팀의 문화업무 +관광팀
- 지역개발과 : 지역계획팀 + 지역개발팀(산촌개발업무제외)
- 건설방재과 : 도로하천팀 + 도시관리팀의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업무 + 재난관리팀의 재난업무
- 건축디자인과 : 건축팀 + 도시관리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의 거리업무 + 지중화 사업
- 교통과 : 교통팀 + 차량등록팀
-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팀 + 농축유통팀
- 산림공원과 : 산림관리팀 + 도시관리팀의 공원녹지 및 국립공원업무 + 지역개발팀의 산촌마을개발업무

● 행정복지본부 : 17팀 ⇒ 8과

- 자치행정과 : 자치운영팀 + 인적자원팀 + 재난관리팀의 통합방위업무
- 홍보전산과 : 혁신흥보팀(혁신업무제외) +정보통신팀
- 회계과 : 회계팀 + 자치운영팀의 청사관리업무
- 세정과 : 세무부과팀 + 세무징수팀
- 평생학습체육과 : 평생학습팀 + 문화체육팀의 체육업무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 사회복지과 : 시민복지팀 + 여성유소팀 + 경로재활팀
- 민원지적과 : 민원서비스팀 + 토지정보팀
- 환경과 : 환경보호팀 + 생활환경팀

직속기관 : 2기관 6팀 ⇒ 2기관 4과 ($\Delta 2$)

● 보건소 : 4팀 ⇒ 2과

- 건강증진과 : 보건운영팀 (지소, 진료소 포함) + 건강증진팀 + 방문보건팀의 방문보건업무
- 보건위생과 : 보건위생팀 + 보건운영팀의 진료실운영

● 농업기술센터 : 2팀 ⇒ 2과

- 영농지원과 : 기술개발팀
-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팀

사업소 : 5 사업소 ⇒ 4 사업소 ($\Delta 1$ 사업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 본청과 통합으로 폐지

※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현직제 유지

□ 분장사무 조정

● 부시장 직속

-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예산, 시정주요 전략업무추진
- 창의시정 · 고객만족 · 성과관리
- 의회, 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무
- 맞춤형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 서울사무소 운영

● 미래경영본부

- 한방인프라 및 한방엑스포 지원, 신활력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관 협력사무, 균형발전 업무
-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재지정·보존관리, 문화·예술단체 지원
- 관광시책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관광지 및 온천개발
- 축제기획 및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전립 및 운영
- 도시계획, 지역개발사업 및 마을개발사업
- 건설행정, 도로유지, 토목·건설사업
-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건축행정 및 인·허가, 공공디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교통 편의시설 설치관리·지도단속, 차량등록 및 차량관리
- 농정업무 및 영농지원,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유통 지원
- 산림보호 및 관리, 휴양림 및 공원관리, 산촌마을조성

● 행정복지본부

- 행정구역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공무원 후생복지, 통합 방위
- 조직관리·공무원 인사·교육
- 시정 홍보, 통계, 통신 및 행정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지출, 계약, 행정·청사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 평생학습, 인재육성재단 운영, 체육지원, 문화·체육 시설관리
- 자원봉사, 새마을 등 단체업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곤궁자·노인·여성·아동·심신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관리
- 민원접수 및 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 및 여권
- 지적 및 부동산관리, 세주소 사업
- 환경보전·환경보호, 유해조수,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관리
- 청소·오물수거 및 처리
-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공중화장실 관리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9.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인적자원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641-5802, FAX 641-5809, 담당자 이종양(kgb3677@hanmail.net)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조사항 등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의 견 제출부서	내 용	주요의견		검토의견	검토결과
		조례안(입법예고)	제출부서(자)의견		
관광팀	미래경영본부내 분장사무를 관광업무와 문화업무 분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책개발 및 홍보문화재 지정보존및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지정·보존관리,문화예술단체지원 ○ 관광시책개발및 홍보,관광자원·관광지및 온천개발 	부서의견 반영	반 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추가 계재 (11항) 요청		11. 농산물가공 및 브랜드 상품개발	부서의견 반영 제12조(소관사무) 11항신설	반 영
한방산업팀	기구(부서) 재 조정 -한방산업팀 +엑스포지원단 = 한방산업과 신설 -지역경제팀 +투자유치팀 = 지역경제과 신설	투자유치담당관 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한방산업과 지역경제과	기구및정원규정에 의거 한방산업과 신설 불가 함	의견 미반영
축산단체 협의회	본청내 축산과 신설 건의 - 회장: 오철수 (문서접수 9. 2일) - 연대 서명: 276명 (자필 66명 인장날인 210명)	농업축산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농업정책팀 농산자원팀 원예유통팀 축산위생팀 </div>	본청내 축산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에 의거 12명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현 담당인력 5명임	의견 미반영 과의 명칭에 축산업무 명칭 부각 및 과내 축산위생팀 존치 관련 규정에 의거 축산과 설치 불가 ※ 의견제출 단체에 검토의견 방문 설명후 서면 결과통지 예정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

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08.7.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 · 국	실 · 과 · 담 당 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군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율령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 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텁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 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 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급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